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후속조치로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특별공급하는 물량을 전체 건설량의 25퍼센트로 확대하고, 생애 최초로 분양가격 6억원 이상의 신혼희망타운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까지 완화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20퍼센트”를 “25퍼센트”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라목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혼희망타운주택 입주자 자격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